기술표준원공고 제 2006 -97호

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6. 4. 27.

기 술 표 준 원 장

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(안) 입안예고

1. 개정취지

전기온수기 등 4품목에 대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의 미설정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전기온수기(K60335-2-21)

○ 이중 조작으로 온수가 토출되는 구조

- 어린이, 노약자의 화상 보호에 대한 규정으로 이중 조작으로 온수가 토출되는 구조

○ 온수 토출구 부근에 화상 주의표시

- 온수 토출구 부근에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

□ 전기매트(K60335-2-17)

○ 온도조절기 커넥터 부분에 대한 절연거리 개정

- 제품의 동작전압, 재질에 따라 절연거리를 새로이 규정하는 방안

  * 절연거리(공간거리, 연면거리) 개정(안)

□ 전열보드(K60335-2-30)

○ 매입형 전열보드의 온도조절기를 벽 등 외부에 설치 가능

- 매입형 전열보드인 경우에 전원코드 중간에 스위치 또는 온도조절기를 벽 등 외부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

□ 전기침대(K70001 제정)

○ 전기침대의 온도조절기를 벽 등에 고정하거나 협탁 등 고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

- 전기침대의 온도조절기가 본체에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, 온도조절기가 발 등에 걸리지 않도록 벽 등에 고정하거나 협탁 등 고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

3. 의견제출

붙임 개정목록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가. 제출기한 : 2006. 5. 31.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*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※ 기술표준원 연락처

·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

· 전화번호 : 02-509- 7236(FAX 02-507-6657)